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 1. 경 과

가. 발 의 자 : 김희걸 의원 (찬성자 11명)

나. 의안번호 : 제 2482 호

다. 발의일자 : 2018. 4. 17.

라. 회부일자 : 2018. 4. 25.

## 2. 제안이유

「도로법 시행령」 제69조, 제71조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를 개정하여 법령의 통일성 및 적법성을 기하고자 함.

## 3. 주요골자

가.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 점용료 증가 상한 금액의 규정에 대해 「도로법 시행령」의 변경 사항을 반영 (안 제6조 제1항)

- 도로법 제68조에 따른 점용료 감면 시, 기존 금액의 감면 전·후가 불명확하여 감면 후로 명확화 함
- 점용료 증가 상한 금액을 100분의 10으로 규정함

나. 소액 점용료 부과 기준을 5,000원 미만에서 1만원 미만으로 조정하고, 법 제68조 제3호(전기, 통신, 가스 공급 등)의 단서 조항을 삭제하여 도로법 시행령의 변경 사항 반영 (안 제9조 제1항)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참조

(1) 입법예고 결과 : 해당 없음

(2) 규제심사 : 해당 없음

(3) 부패영향평가 결과 : 해당 없음

(4) 비용추계 등의 자료 : 해당 없음

## 5. 검토의견

- 본 개정안은 2개 연도 이상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 점용료 산정 방법에 대한 「도로법 시행령」 (이하 ‘영’) 개정(2015.12.22.)사항과, 소액 점용료 및 변상금의 면제기준을 상향조정(5천원→1만원)하는 상위법령 개정(2017.12.5.)사항을 각각 반영하려는 것임.

[표 1] 개정안 주요골자

구 분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제6조(점용료의 조정)	전년 대비 납부해야 할 연간 점용료가 10% 이상 증가 시 <b>차등 조정</b>	전년 대비 납부해야 할 연간 점용료가 10% 이상 증가 시 <b>10% 증가로 단일화</b>	「도로법 시행령」 제69조제3항 개정 (2015.12.22.)
제9조(점용료 등의 소액부징수 및 반환)	점용료 및 변상금이 <b>5,000원</b> 미만인 경우 부과하지 않음 법 제68조제3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 받는 경우 징수 면제 배제	점용료 및 변상금이 <b>10,000원</b> 미만인 경우 부과하지 않음  (삭 제)	「도로법 시행령」 제71조제4항 개정 (2017.12.5.)

- 먼저, 현행 조례 제6조(점용료의 조정)는 영 제69조제3항에 따라 점용료가 전년도 대비 10% 이상 증가 시, [표 2]의 점용료 조정산식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 증가율을 달리해 왔으나,
- 개정안은 영 제69조제3항의 개정(‘15.12.22.)<sup>1)</sup>을 반영하여 연간 점용료가 10% 이상 증가한 모든 경우에 대해 적용 증가율을 “100분의 10”으로 통일시키고 있음.

1) 「도로법 시행령」 제69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및 조정) ① ~ ② (생략)

③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1항 및 법 제68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표 2] 현행 조례의 점용료 조정산식(영 제69조 개정 전)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연간 점용료의 증가율(%)		적용 증가율 (%)	납부할 점용료	적용 증가율 (%)	납부할 점용료
1.	10 이상 20 미만	10	전년도 점용료 × 1.10	10	전년도 점용료 × 1.10
2.	20 이상 50 미만	14	전년도 점용료 × 1.14		
3.	50 이상 100 미만	18	전년도 점용료 × 1.18		
4.	100 이상 200 미만	22	전년도 점용료 × 1.22		
5.	200 이상 500 미만	26	전년도 점용료 × 1.26		
6.	500 이상	30	전년도 점용료 × 1.30		

- 이는 공시지가의 높은 상승 등에 기인하여 부과 점용료가 갑자기 급등함에 따른 납부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 한편, 서울시는 영 개정이 2015.12.22.일 이루어졌으나 그동안 동 조례의 개정을 전제로 영 개정사항을 반영해 왔는데, [표 3] 중 전년대비 점용료 10% 이상 증가 현황을 살펴보면,

[표 3] 전년대비 도로점용료 10% 이상 증가 건수 현황(최근 5년간)

연도	연간 점용건수 (건)	연간 점용료 총액 (원)	전년대비 점용료 10% 이상 증가 현황		
			건수 (건) (A)	점용료 총액 (원) (B)	평균 점용료 (원) (B/A)
2013	37,041	75,837,492,520	21,472	30,250,355,946	1,408,828
2014	39,575	81,205,423,588	21,109	26,539,673,927	1,257,268
2015	39,175	86,445,028,346	28,967	40,075,675,418	1,383,494
2016	41,361	94,048,242,746	29,869	46,182,540,807	1,546,170
2017	42,560	102,396,262,238	25,052	42,707,042,682	1,704,736

- 적용 증가율을 10%로 통일시킨 2016년의 경우와 현행 조례 규정처럼 [표 2]의 산식에 의해 적용 증가율을 차등 적용한 2015년의 경우를 비교할 때, 2016년의 평균 점용료가 감소하기 보다는 오히려 증가(138만원 → 154만원)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 개정안과 같이 적용 증가율을 10%로 통일시켜도 세수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음을 유추할 수 있고, 기존 적용 증가율의 복잡한 산식을 간단히 정리하여 행정효율을 제고했다는 점에서도 바람직하다 하겠음.
- 다음으로, 안 제9조(점용료 등의 소액부징수 및 반환)는 고지서 발급 등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점용료 및 변상금이 '5천원 미만'인 경우에 부과를 면제하던 것을 2017.12.5.일 영 개정예 따라 '1만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고,
- 영 제71조제4항의 개정2)사항에 따라 현행 제9조 단서인 “「도로법」 제68조제3호에 따라 점용료 감면 받는 경우는 소액 징수 면제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 이 경우 역시, 신규로 소액 면제 대상에 포함되는 5천원 이상

---

2) 「도로법 시행령」 제71조(점용료의 부과·징수 및 반환) ① 도로관리청은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징수하려는 경우에는 점용료 납부 의무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점용의 목적이 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해당 토지나 건물의 관리인 또는 전체 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있는 경우 도로관리청은 그 관리인 또는 대리인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할 때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를 할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징수하며, 해당 연도분은 도로점용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 회계연도 시작 후 3개월 이내에 부과·징수한다. 다만,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3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③ (생략)

④ 제2항에 따른 점용료의 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점용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⑤ ~⑦ (생략)

1만원 미만의 도로 점용료 및 변상금에 대한 최근 5년간의 부과 현황을 살펴보면,

- 점용료 부과는 연평균 88건에 68만원, 변상금은 연평균 62건에 46만원으로, 소액 면제기준을 현행 '5천원 미만'에서 '1만원 미만'으로 상향한다하더라도 투입 행정력 대비 세입감소는 극히 미미함을 알 수 있음([표 4] 참조).

[표 4] 5천원 이상 1만원 미만의 도로 점용료 및 변상금 부과현황(최근 5년간)

연도	점용 (건)	점용료 (원)	변상 (건)	변상금 (원)	합계건수 (건)	합계금액 (원)
2013	74	582,180	50	360,360	124	942,540
2014	79	633,720	69	509,870	148	1,143,590
2015	94	750,630	62	435,170	156	1,185,800
2016	86	655,780	78	585,340	164	1,241,120
2017	105	801,470	52	384,320	157	1,185,790
평균	88	684,756	62	455,012	150	1,139,768

- 또한, 현행 제9조 단서의 예외규정에 의해 소액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5천원 미만의 최근 5년간 부과 현황을 살펴보면 점용료와 변상금을 합하여 연평균 15만원 수준에 불과하여 개정안과 같이 동 예외규정을 삭제하더라도 이 역시 세수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미미함([표 5] 참조).

[표 5] 5천원 미만의 도로 점용료 및 변상금 부과현황(최근 5년간)

연도	점용 (건)	점용료 (원)	변상 (건)	변상금 (원)	합계건수 (건)	합계금액 (원)
2013	87	100,400	10	38,760	97	139,160
2014	93	148,640	15	48,830	108	197,470
2015	72	89,220	11	41,260	83	130,480
2016	92	120,380	13	41,470	105	161,850
2017	101	95,970	6	27,700	107	123,670
평균	89	110,922	11	39,604	100	150,526

- 따라서 본 개정안의 경우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고, 개정에 따른 세수영향이 전반적으로 미미하므로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안 제6조의 경우 상위법령 개정이 2015.12.22.일에 이루어졌음에도 지금에 와서야 조례 정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바,
-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조례 규정이 개정된 상위법령과 불일치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임.